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오는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주지 국유화에 따른 대상 토지 매각허용 대상자 기준(안 제3조)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하는 수복지역 내 원주민, 정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

매,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자를 매각허용 대상자로 정함.

나. 대상 토지 매각 범위(안 제4조)

무주지가 국유화됨에 따라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주민 등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개간 및 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둬.

다. 대상 토지 매각대금 결정 방법 등(안 제5조, 제6조)

매각대금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라. 대상 토지 매각대금 납부시 분납 허용(안 제7조)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자를 붙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함.

마. 대상 토지 대부 범위(안 제8조)

무주지가 국유화됨에 따라 대상 토지를 경작한 주민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최고 한도로 하여, 수익계약 방식으로 대부를 할 수 있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5. ~ 7. 15.)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
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동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함에
있어서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
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2항
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 토지”라
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는 이
법 공포일(이하 ‘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 대상 토지로부터 직선거
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임대 또는 위탁경영을 포함한다. 이하 본 영에서 같
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라 1973.12.31. 이전에
수복지역으로 이주·정착한 정책이주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그 권리를 승계

한 자

3. 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기준일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대상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하고 있는 자

제4조(토지의 매각범위) ① 제3조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에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의계약 대상자가 기준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매각면적은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세대당 매각 면적은 매각허용 대상자의 대상 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기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세대구성은 이 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대상 토지의 가격결정)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본 영에서 동일하다)은 대상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대금은 시가(時價)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매각대금의 결정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한국감정원이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한국감정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중 가장 높은 평가액이 가장 낮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①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 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8조(대상 토지의 대부) 대상 토지 중 제3조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는 기준일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세부조건) 이 규정에 따른 매각 또는 대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제10조(보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 또는 대부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유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165